



LPG충전업계 건의에 대한 검토의견

한국가스안전공사

’04.2.19 LPG업계 안전관리 담당 임원 간담회시 LPG업계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 가스안전공사가 검토의견을 송부해왔다. 가스안전공사는 의견수렴 및 재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차기 LPG충전업계 간담회시 토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

건의사항(건의자)	검토의견	비고
○ 오발진방지장치 관련 법령개정내용은 수용입장이나 설치 기한은 필요	- 액법시행규칙 부칙에 1년간의 설치기간을 주는 것으로 입법예고됨	
○ 현행 LPG충전시설의 법령체계는 용기, 자동차, 탱크로리 충전으로 구분되나, 로딩암과 배관의 경우 프로판, 부탄 등 가스별로 구분·적용 가능 여부	- 법령개정을 통해 각각의 충전시설에서, 프로판 시설과 부탄시설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.	
○ 안전관리우수업체 지정제도 도입 필요	- 안전관리우수업체 지정제도 도입은 가스안전관리 선진화 방안 중 유통구조 개선대책 수립·추진의 안전시범 판매업소 모델 시범운영 결과 후 추진예정	
○ 주거·상업지역에서 안전성 평가를 득한 경우 도시계획법, 학교보건법 등 타 법령에서도 인정가능토록 건의	- 액법 이외의 다른 법령의 개정에 대한 건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산자부에 업계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	
○ LPG충전시설의 완성검사시 기계실 내부의 사소한 변경은 완공도면처리 가능도록 건의	- 액법시행규칙 30조제2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길이 20m미만의 배관의 변경은 완공도면 처리가능	
○ LPG충전시설의 안전거리기준은 기존 규정도 문제가 있으며, 또한, 안전장치를 설치할 경우 안전거리 기준단축이 가능하다고 보며, 선진외국의 기준보다도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완화 필요	- 안전거리는 최근 액법시행규칙 개정(2003. 11. 7)을 통해 완화된 바 있으며, 부천 및 익산 충전소 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 감안시 현재 사업소경계와의 거리보다 완화하는 것은 곤란함.	
○ 저저장탱크 외면검사시 1차 외면검사후 방식조치 설치시 재외면 검사면제 ○ 15년 매몰탱크의 외면검사는 재검사과정에서 risk가 높으므로 외국사례를 통해 개선방안 검토 필요	- 매몰설치후 15년이 경과된 저저장탱크에 대하여 5년마다 외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10년마다 실시하도록 완화(고법고시 제15-2-3조제2항)되었으며, - 외면검사후 방식조치 설치시 재외면검사 면제 및 개선방안 검토는 선진외국의 사례 및 선행연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.	

건의사항(건의자)	검토의견	비고
OLPC충전시설내 사무실 등 건축물의 증개축이 가능도록 건교부의 업무협조가 필요함	- 액법 이외의 다른 법령의 개정에 대한 건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산자부에 업계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	
○부단전용충전소 배관 안전밸브의 설정압력 상향 조정필요	-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이충전용으로 사용되는 설비의 경우 1.8Mpa이상 내압시험압력의 10분의 8이하의 압력으로 설정이 가능함	
○LPC충전소에 설치되는 간판은 방폭지역내 설치할 경우 상호등을 킥 수 없으며, 야간 운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지면에서 4.5m이상의 높이에 설치되는 비방폭전기설비의 상호등을 인정할 수 있도록 방폭지역의 명확한 구분 필요	- LPC충전시설의 위험장소 구분도에 의하여 위험원(자동차용 충전기 등)의 상부에서 3m까지를 위험장소로 볼 수 있으며, 4.5m이상의 높이에 비방폭전기설비는 설치가 가능함	
○디스펜서 주변 충전원 대기실에 전원설비 등이 방폭 기준에 맞게 설치되면 위험장소내 비방폭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허용	- 전원설비 등이 방폭기준에 맞게 설치되더라도 비방폭형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점화로 인한 가스폭발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비방폭형 제품은 적합치 아니하다고 사료됨. 참고로 현재 조은포스텍, 장위데이터시스템, MS ENG, 동화프라임(주)는 방폭형으로 신용카드단말기를 제조하여 공사의 방폭성능검정을 받았음	
○이충전장소의 탱크로리 접지장치의 방폭형 설치는 무의미 하며, Closed system에서 접지를 하므로 점화원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불필요함	-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관리환경상 일본의 기준을 참고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본의 JPA기준에는 방폭형 접속금구를 설치토록 하고 있음. 참고로 동 사항은 98년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개정된 내용임	
○자체적 역량과 교육시설을 갖추어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 안전교육에 대한 인정과 실무적 위양 필요	- 가스관련 안전교육은 교육목적, 대상, 방법, 시기 등에 따라 다양한 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나, 가스3법에 의해 실시되는 법정 전문교육은 규제완화처원에서 매 2년마다 실시한 정기교육을 폐지하고,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를 대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에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. - 가스업계 자체 교육장 및 시설을 활용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법정전문교육을 면제하는 것은 각 사업장 규모에 따라 교육환경의 차이가 크므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, 형식적인 교육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	
○기존 LPC충전시설의 살수장치 설치를 시도하였으나 물탱크, 물펌프 등 자재 운반이 안되므로 탱크로리 과류방지밸브 설치, 충전시설의 배관에 긴급차단장치 및 체크밸브 등 설치로 유도가 바람직하며, 살수장치의 효율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검토 필요	- 기존 충전소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살수장치 설치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할 시향으로 판단됨	
○저저장탱크별 과충전방지장치 설치와 동시 정지시스템 구축 보다 가스누설경보장치와 긴급차단장치를 연동하는 것이 좋으며, 과충전하는 이유는 저저장탱크의 용량이 적은 이유 이므로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안전성 높이는 것이 좋음	- 과충전방지장치와 압축기·펌프 정지시스템을 연동하는 것을 의무화하려는 이유는 과충전을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가스누출경보장치와 긴급차단장치를 연동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항이며, 저저장탱크의 용량이 적어서 잦은 이충전을 하는 경우에도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	